

신안군의회 규칙 제14호

공포문

신안군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 12. 20.)
에서 의결된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신안군의회 의장

김 혁서



붙임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지방자치법 제83조”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의외의 개.폐선포)**”를 “(의회의 개.폐선포)”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회의”를 삽입한다.

제12조 앞에 “제1절 회의의 개·폐”를 삽입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63조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휴회중이라도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6조 앞에 “제2절 의사일정”을 삽입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9조 앞에 “제3절 의안 및 동의”를 삽입한다.

제20조제2항 중 “**2(특별위원회)**”를 “**2(특별위원회)**”로 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28조 앞에 “제4절 발언”을 삽입한다.

제3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8조 앞에 “제5절 표결”을 삽입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후단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기록표결(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등)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45조 앞에 “제6절 회의록”을 삽입한다.

제48조 제1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49조 앞에 “제4장 위원회”를 삽입한다.

제60조의2를 제4장 제60조의4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밖의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 중 본회의의 관련규정을 준용토록 한다.

제60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60조의3(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 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61조 앞에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를 삽입한다.

제6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6조 앞에 “제6장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삽입한다.

제6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내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에 상응하는 주요인사가 의회에 내방한 때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연설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 앞에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를 삽입한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7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피임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장(제72조의2 및 제7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주민조례청구

제72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72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 절차는 제72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 앞에 “제9장 질서”를 삽입한다.

제81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 앞에 “제10장 징계”를 삽입한다.

제82조제1항 중 “법 제87조”를 “법 제9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를 “법 제95조”로 한다.

제86조를 제85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장 총 칙</u>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지방자치법 제71조</u>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안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6조(<u>의회의 개.폐선포</u>) (생 략)</p> <p style="margin-left: 2em;"><u><신 설></u></p> <p>제11조(<u>의장.부의장의 사임</u>) ① (생 략) <u>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u></p> <p style="margin-left: 2em;"><u><신 설></u></p> <p style="margin-left: 2em;"><u><신 설></u></p> <p>제14조(<u>회의에 관한 선포</u>) ① (생 략) <u>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u></p>	<u>제1장 총 칙</u> <p>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 제83조</u> ----- ----- ----- ----- ----- ----- ----- ----- -----. <u>제6조(<u>의회의 개.폐선포</u>) (현행과 같음)</u></p> <p><u>제9조의2(<u>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u>)</u>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제11조(<u>의장.부의장의 사임</u>) ① (현행과 같음) <u>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회의</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절 회의의 개 · 폐</u></p> <p>제14조(<u>회의에 관한 선포</u>) ① (현행과 같음) <u>② -----</u></p>

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5조(휴회) ① (생략)

② 휴회중이라도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
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신 설>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
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
시 그 일정을 정한다.

<신 설>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생략)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

----- 제72조제1항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휴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휴회중이라도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
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2절 의사일정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
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
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현 행과 같음)

(2) _____

원회를 결정한다.

제20조의 2(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 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 ② (생략)

제27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신설>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 ② (생략)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신설>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

----- 2(특별위원회) -----

-----.

②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4절 발언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5절 표결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기록표결(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등)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삭제>

<신 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44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신 설>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

-----.
----- 제1항 -----
-----.

<삭 제>

제44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6절 회의록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략)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
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
다.

<신설>

<신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
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
다.

제4장 위원회

제60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
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
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
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 진술 · 자문 · 연구 ·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 설>

제60조의2(준용규정) 그 밖의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 중 본회의의 관련규정을 준용토록 한다.

<신 설>

제65조(결산의 심사) ① · ② (생략)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 진술 · 자문 · 연구 ·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60조의3(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 · 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60조의4(준용규정) 그 밖의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 중 본회의의 관련규정을 준용토록 한다.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5조(결산의 심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68조의2(본회의 초청연설) 국내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에 상응하는 주요인사가 의회에 내방한 때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연설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생략)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 ② (생략)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6장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68조의2(본회의 초청연설) 국내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에 상응하는 주요인사가 의회에 내방한 때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연설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법 제91조-----

 -----.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주민조례청구

제72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
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
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
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
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신 설>

제72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
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
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
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7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81조(녹음.녹화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7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생략)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 요구할 때에는 찬성 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 ⑤ (생략)

제86조 (생략)

제9장 질서

제81조(녹음.녹화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장 징계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99조-----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법 제95조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85조 (현행 제86조와 같음)